

KLSI

ISSUE PAPER

www.klsi.org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목차]

1. 머리말
2. 임금인상
3. 임금불평등
4. 저임금계층
5. 맺는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siedit

〈요 약〉

통계청이 매년 8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3분위(8.0~10.8%)가 4~10분위(3.2~7.7%)보다 높고,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률도 1~4분위(7.9~10.3%)가 5~10분위(0.6~8.2%)보다 높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두 해 임금인상률은 1~4분위(16.5~20.6%)가 5~10분위(8.3~13.6%)보다 높다.

둘째, 2018년 월 임금인상률은 2~4분위(11.2~16.3%)가 5~10분위(1.2~9.4%)보다 높다. 2019년에 3~6분위(2.8~5.4%)는 월 임금이 증가하고, 1~2분위(-2.4~-4.1%)와 7~8분위(-0.1~-0.2%)는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두 해 임금인상률은 2~5분위(10.9~17.6%)가 두 자리 수로 6~10분위(5.0~9.2%)보다 높다.

셋째, 1분위는 2018년과 2019년 두 해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19.9%로 가장 높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1.9%로 가장 낮다. 1~2분위는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8.3~8.8%로 높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2.4~-4.1%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고용주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노동시간 쪼개기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 주당 노동시간이 1분위는 2.8시간, 2분위는 3.1시간 감소했다. 특히 1분위에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8년 33.7%에서 2019년 41.9%로 8.2%p 증가했다.

넷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 경계값 / 하위10% 경계값)은 2017년 4.13배에서 2018년 3.75배, 2019년 3.59배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 5.63배에서 5.04배로 감소했다가 5.39배로 다시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0.3160에서 0.3098, 0.2988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 0.3293에서 0.3289, 0.3250로 감소했다.

다섯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28만명(21.4%)에서 315만명(15.7%)으로 감소했다가 324만명(15.8%)으로 조금 증가했다. 월 임금 기준으로는 410만명(20.5%)에서 359만명(17.9%)으로 감소했다가 444만명(21.5%)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018~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1분위(하위 10%)에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월 임금 기준으로 임금격차(P9010)가 확대되고 저임금계층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1)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3) 기간제보호법 상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하고,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권고한 사항이다.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머리말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에서 1,060원(16.4%) 인상되었고,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 7,530원에서 820원(10.9%) 인상되었다. 이 글은 2018년과 2019년 두 해에 걸쳐 이루어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대상 자료는 통계청이 매년 8월 조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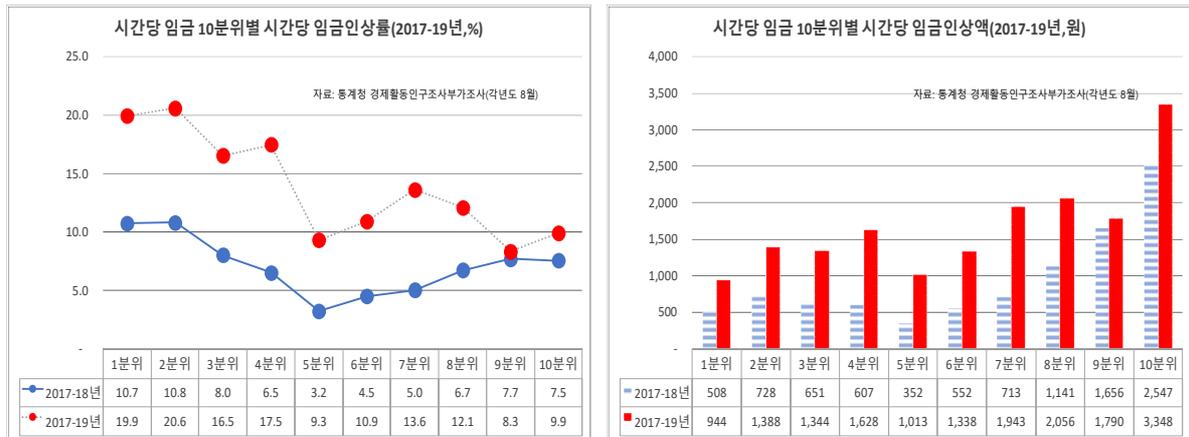
2. 임금인상

가. 시간당 임금

2018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3분위(8.0~10.8%)가 4~10분위(3.2~7.7%)보다 크게 높다.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률도 1~4분위(7.9~10.3%)가 5~10분위(0.6~8.2%)보다 높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두 해 임금인상률은 1~4분위(16.5~20.6%)가 5~10분위(8.3~13.6%)보다 크게 높다. 이는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해석된다([그림 1]좌와 [표 1] 참조).

2018년 시간당 임금인상액은 1~4분위(508~728원)와 5~7분위(352~713원)가 엇비슷하다. 그러나 8~10분위(1,141~2,546원)보다 크게 낮고,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액 평균(853원)에 못 미친다. 2018년과 2019년 두 해 시간당 임금인상액은 1~6분위(944~1,628원)가 엇비슷하다. 그러나 7~10분위(1,790~3,348원)보다 크게 낮고,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액 평균(1,520원)에 못 미친다. 이처럼 저임금 계층의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높아도 임금인상액이 낮은 것은, 저임금 계층의 시간당 임금수준이 워낙 낮고 고임금 계층의 시간당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이다([그림 1]우와 [표 1] 참조).

[그림 1] 시간당 임금 10분위별 시간당 임금 인상률과 인상액 (2017-2019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년도 8월)

[표 1] 10분위별 시간당 임금 평균값과 인상액, 인상률(2017-2019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기준	평균값(원)			인상액(원)			인상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17-18년	2018-19년	2017-19년	2017-18년	2018-19년	2017-19년
1분위	4,736	5,244	5,680	508	436	944	10.7	8.3	19.9
2분위	6,735	7,463	8,123	728	660	1,388	10.8	8.8	20.6
3분위	8,129	8,780	9,473	651	693	1,344	8.0	7.9	16.5
4분위	9,314	9,921	10,942	607	1,021	1,628	6.5	10.3	17.5
5분위	10,889	11,241	11,902	352	661	1,013	3.2	5.9	9.3
6분위	12,271	12,823	13,609	552	786	1,338	4.5	6.1	10.9
7분위	14,251	14,964	16,194	713	1,230	1,943	5.0	8.2	13.6
8분위	17,019	18,160	19,075	1,141	915	2,056	6.7	5.0	12.1
9분위	21,503	23,159	23,293	1,656	134	1,790	7.7	0.6	8.3
10분위	33,789	36,336	37,137	2,547	801	3,348	7.5	2.2	9.9
전체	13,754	14,607	15,274	853	667	1,520	6.2	4.6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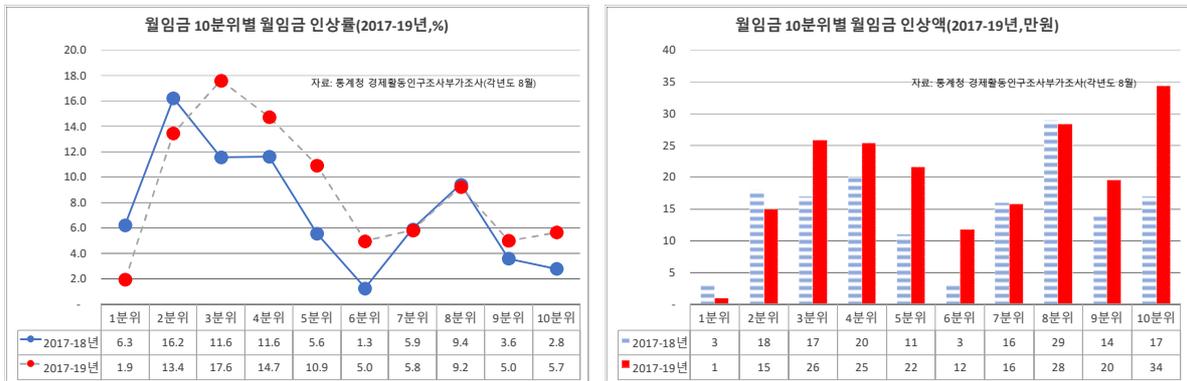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년도 8월)

나. 월 임금

2018년 월 임금인상률은 2~4분위(11.2~16.3%)가 5~10분위(1.2~9.4%)보다 크게 높다. 2019년에 3~6분위(2.8~5.4%)는 월 임금이 증가했지만, 1~2분위(-2.4~-4.1%)와 7~8분위(-0.1~-0.2%)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두 해 임금인상률은 2~5분위(10.9~17.6%)가 두 자리 수로 6~10분위(5.0~9.2%)보다 크게 높다([그림 2]좌와 [표 2] 참조).

2018년 월 임금인상액은 2~4분위(17~20만원)가 7~10분위(14~29만원)와 엇비슷하다. 이는 2018년에도 4분위 월 임금 평균값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등 저임금계층의 임금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3~6분위(5~11만원)는 월 임금이 증가했지만, 1~2분위(-2~-3만원)와 7~8분위(-0~-1만원)는 월 임금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두 해 임금인상액은 2~5분위(15~26만원)가 6~7분위(12~16만원)보다는 높지만, 8~10분위(20~34만원)보다 낮다([그림 2]우와 [표 2] 참조).

[그림 2] 월 임금 10분위별 월 임금 인상률과 인상액 (2017-2019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년도 8월)

[표 2] 10분위별 월 임금 평균값과 인상액, 인상률(2017-2019년, 단위: 만원, %)

월임금 기준	평균값(원)			인상액(원)			인상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17-18년	2018-19년	2017-19년	2017-18년	2018-19년	2017-19년
1분위	48	51	49	3	-2	1	6.3	-4.1	1.9
2분위	111	129	126	18	-3	15	16.2	-2.4	13.4
3분위	147	164	173	17	9	26	11.6	5.4	17.6
4분위	172	192	197	20	5	25	11.6	2.8	14.7
5분위	198	209	220	11	11	22	5.6	5.1	10.9
6분위	236	239	248	3	9	12	1.3	3.7	5.0
7분위	271	287	287	16	-0	16	5.9	-0.1	5.8
8분위	307	336	335	29	-1	28	9.4	-0.2	9.2
9분위	391	405	411	14	6	20	3.6	1.4	5.0
10분위	609	626	643	17	17	34	2.8	2.8	5.7
전체	243	256	264	13	8	21	5.3	3.2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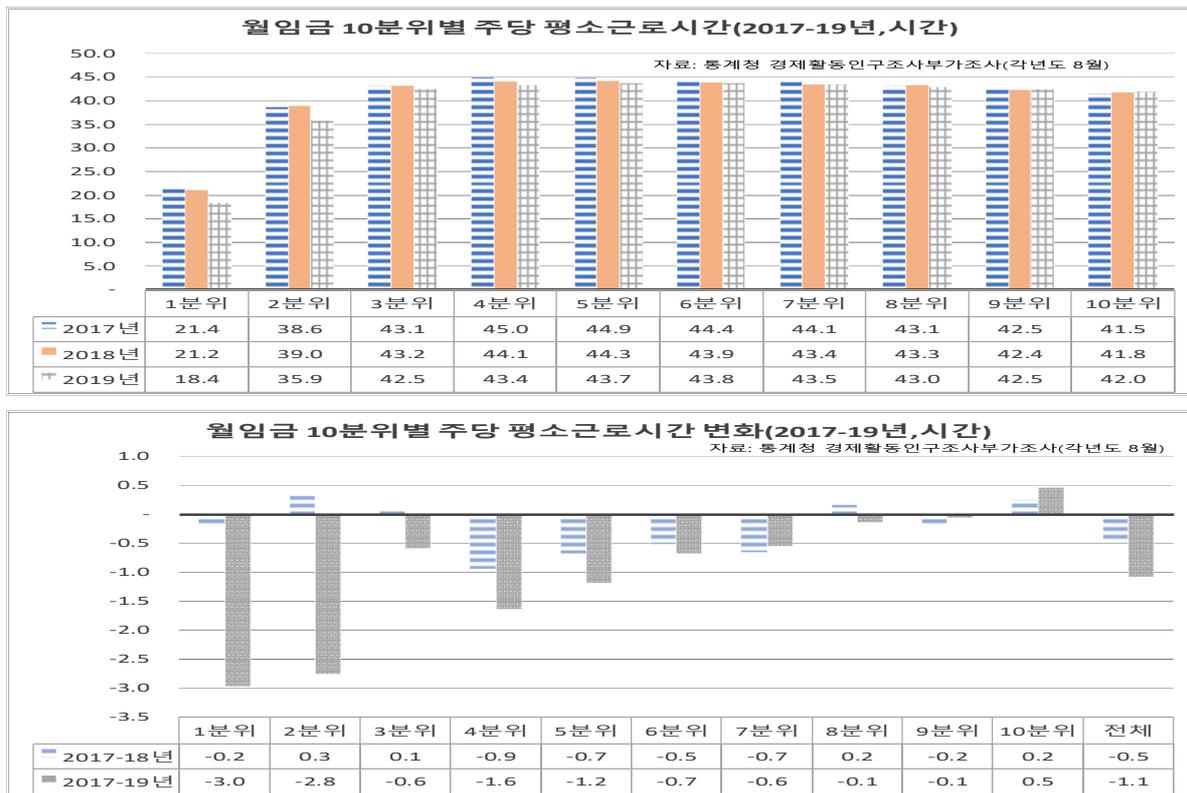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년도 8월)

다. 노동시간

2018년과 2019년 두 해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분위가 19.9%로 가장 높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1.9%로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2분위가 8.3~8.8%로 높는데, 월 임금인상률(-2.4~-4.1%)은 오히려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2019년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1분위는 2.8시간, 2분위는 3.1시간 노동시간이 줄었다. 특히 1분위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을 2017년 31.4%에서 2018년 33.7%, 2019년 41.9%로 늘렸다(표 3] 참조).

이처럼 초단시간 노동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데는, 주당 노동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하면 (1)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주휴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며, (3) 기간제보호법 상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4)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 고용주에게 각종 편익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제도 상의 허점부터 바로잡아야 쪼개기 계약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¹⁾

[그림 3] 월 임금 10분위별 주당 노동시간과 증감,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2017-19년, 단위: 시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년도 8월)

1) 자세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2017),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 참조바람.

[표 3] 월 임금 10분위별 주당 노동시간과 증감,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2017-19년, 단위: 시간,%)

월 임금 기준	주당 평소 노동시간			노동시간 증감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		
	2017년	2018년	2019년	2017-18년	2018-19년	2017-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1분위	21.4	21.2	18.4	-0.2	-2.8	-3.0	31.4	33.7	41.9
2분위	38.6	39.0	35.9	0.3	-3.1	-2.8	1.6	1.5	2.1
3분위	43.1	43.2	42.5	0.1	-0.7	-0.6	0.4	0.0	0.2
4분위	45.0	44.1	43.4	-0.9	-0.7	-1.6	0.1	0.2	0.2
5분위	44.9	44.3	43.7	-0.7	-0.5	-1.2	0.1	0.5	0.1
6분위	44.4	43.9	43.8	-0.5	-0.2	-0.7	0.1	0.1	0.1
7분위	44.1	43.4	43.5	-0.7	0.1	-0.6	0.1	0.1	0.1
8분위	43.1	43.3	43.0	0.2	-0.3	-0.1	0.1	0.1	0.3
9분위	42.5	42.4	42.5	-0.2	0.1	-0.1	0.1	0.1	
10분위	41.5	41.8	42.0	0.2	0.2	0.5			0.1
전체	40.9	40.4	39.8	-0.5	-0.6	- 1.1	3.4	3.8	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년도 8월).

3. 임금불평등

가. 시간당 임금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7년 1만3,754원에서 2018년 1만4,607원, 2019년 1만5,274원으로 증가했고, 중위값은 2017년, 2018년 1만1,513원으로 변함이 없다가 2019년 1만2,434원으로 증가했다. 하위 10% 컷오프(cut-off)의 시간당 임금은 5,987원에서 6,908원, 7,368원으로 증가했고, 상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은 2만 4,753원에서 2만 5,905원, 2만6,480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 컷오프와 하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4.13배에서 3.75배, 3.59배로 감소했다. 중위값과 하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격차(P5010)는 1.92배에서 1.67배로 감소했다가 1.69배로 조금 증가했고, 상위 10% 컷오프와 중위값의 시간당 임금격차(P9050)는 2.15배에서 2.25배로 증가했다가 2.13배로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2017년 0.3160에서 2018년 0.3098, 2019년 0.2988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표 4] 참조).

나. 월 임금

월 평균임금은 2017년 243만원에서 2018년 256만원, 2019년 264만원으로 증가했고, 중위값은 200만원에서 210만원, 23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위 10% 컷오프(cut-off)의 월 임금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89만원으로 감소했고, 상위 10% 컷오프의 월임금은 450만원에서 454만원, 48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 컷오프와 하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격차(P9010)는 5.63배에서 5.04배로 감소했다가 5.39배로 증가했다. 중위값과 하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격차(P5010)는 2.50배에서 2.33배로 감소했다가 2.58배로 증가했고, 상위 10% 컷오프와 중위값의 월 임금격차(P9050)는 2.25배에서 2.16배, 2.09배로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2017년 0.3293에서 2018년 0.3289, 2019년 0.3250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표 4] 참조).

[표 4] 임금불평등 추이 (2017-2019년, 단위: 원, 만원)

시간당 임금		시간당 임금(원)			월 임금(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노동자수(천명)		20,006	20,045	20,559	20,006	20,045	20,559
평균값		13,754	14,607	15,274	243	256	264
중위값		11,513	11,513	12,434	200	210	230
경계값	하위10%	5,987	6,908	7,368	80	90	89
	20%	7,420	8,146	8,699	130	150	150
	30%	8,635	9,211	10,074	154	170	180
	40%	9,786	10,362	11,513	180	200	200
	50%	11,513	11,513	12,434	200	210	230
	60%	13,158	13,816	14,391	250	250	252
	70%	15,351	16,118	17,270	280	300	300
	80%	18,723	20,148	20,148	340	350	350
	90%	24,753	25,905	26,480	450	454	480
임금 불평등	p9010(배)	4.13	3.75	3.59	5.63	5.04	5.39
	p5010(배)	1.92	1.67	1.69	2.50	2.33	2.58
	p9050(배)	2.15	2.25	2.13	2.25	2.16	2.09
	Gini계수	0.3160	0.3098	0.2988	0.3293	0.3289	0.32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년도 8월).

4. 저임금계층

가. 시간당 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 중위값은 2017년, 2018년 1만1,513원으로 변함이 없다가 2019년 1만2,434원으로 증가했다. 저임금 계층은 2017년 428만명(21.4%)에서 2018년 315만명(15.7%)으로 감소했고, 2019년에는 324만명(15.8%)으로 조금 증가했다. 중간임금 계층은 1,131만명(56.5%)에서 1,206만명(60.1%), 1,249만명(60.8%)으로 계속 증가했고, 고임금 계층은 442만명(22.1%)에서 484만명(24.1%)으로 증가했다가, 482만명(23.5%)으로 조금 감소했다(표 5 참조).

나. 월 임금

월 임금 중위값은 2017년 200만원에서 2018년 210만원, 2019년 230만원으로 증가했다. 저임금 계층은 2017년 410만 명(20.5%)에서 2018년 359만명(17.9%)로 감소했다가 2019년 444만명(21.6%)으로 증가했다. 중간임금 계층은 1,007만명(50.3%)에서 1,149만명(57.3%)으로 증가했다가 1,138만명(55.4%)으로 감소했고, 고임금 계층은 585만명(29.2%)에서 496만명(24.8%), 474만명(23.0%)으로 감소했다(표 5 참조).

[표 5] 저임금계층 추이 (2017-2019년, 단위: 천명, %)

		시간당 임금			월임금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 (천명)	저임금계층	4,282	3,150	3,242	4,096	3,591	4,438
	중간임금계층	11,309	12,056	12,492	10,065	11,489	11,383
	고임금계층	4,416	4,840	4,824	5,845	4,964	4,738
	전체	20,006	20,045	20,559	20,006	20,045	20,559
비율 (%)	저임금계층	21.4	15.7	15.8	20.5	17.9	21.6
	중간임금계층	56.5	60.1	60.8	50.3	57.3	55.4
	고임금계층	22.1	24.1	23.5	29.2	24.8	23.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년도 8월).

5. 맺는 말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3분위(8.0~10.8%)가 4~10분위(3.2~7.7%)보다 높고,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률도 1~4분위(7.9~10.3%)가 5~10분위(0.6~8.2%)보다 높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두 해 임금인상률은 1~4분위(16.5~20.6%)가 5~10분위(8.3~13.6%)보다 높다.

둘째, 2018년 월 임금인상률은 2~4분위(11.2~16.3%)가 5~10분위(1.2~9.4%)보다 높다. 2019년에 3~6분위(2.8~5.4%)는 월 임금이 증가하고, 1~2분위(-2.4~-4.1%)와 7~8분위(-0.1~-0.2%)는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두 해 임금인상률은 2~5분위(10.9~17.6%)가 두 자리 수로 6~10분위(5.0~9.2%)보다 높다.

셋째, 1분위는 2018년과 2019년 두 해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19.9%로 가장 높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1.9%로 가장 낮다. 1~2분위는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8.3~8.8%로 높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2.4~-4.1%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고용주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노동시간 쪼개기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 주당 노동시간이 1분위는 2.8시간, 2분위는 3.1시간 감소했다. 특히 1분위에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8년 33.7%에서 2019년 41.9%로 8.2%p 증가했다.

넷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 경계값 / 하위10% 경계값)은 2017년 4.13배에서 2018년 3.75배, 2019년 3.59배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 5.63배에서 5.04배로 감소했다가 5.39배로 다시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0.3160에서 0.3098, 0.2988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 0.3293에서 0.3289, 0.3250로 감소했다.

다섯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28만명(21.4%)에서 315만명(15.7%)으로 감소했다가 324만명(15.8%)으로 조금 증가했다. 월 임금 기준으로는 410만명(20.5%)에서 359만명(17.9%)으로 감소했다가 444만명(21.5%)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018~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1분위(하위 10%)에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월 임금 기준으로 임금 격차(P9010)가 확대되고 저임금계층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1)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가와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3) 기간제보호법 상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하고,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권고한 사항이다.